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 . . (제 회)	

가 맹 사 업 거 래 의 공 정 화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 문제 시정 및 점주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서 창업 단계에서의 정보공개서 내용과 체계 개편 및 폐업 단계에서의 중도 폐업시 위약금 정보 제공을 통해 가맹희망자에 대한 가맹 창업 정보 제공을 내실화하고, 그 밖에 정보공개서 관련 필수 서류나 서식 법제화를 통해 시행령 미비사항을 보완하며,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등 그 밖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에 가맹 창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추가하고, 중복되거나 창업 의사결정과 관련 없는 항목은 삭제하여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결정을 지원하고, 일부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의 변경 주기를 분기 1회로 단축(안 제4조 제1항 별표1, 안 제5조의3 제1항 별표1의2)

나. 정보공개서 신규·변경등록 서식·절차 등 정비(안 제5조의2, 제5조의3, 별지서식)

1) 가맹본부의 본점 주소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모두 기입하도록 정보공개서 신청서 서식 정비

- 2)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시 직영점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
-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

다. 정보공개서 등록거부 통지, 공개 예정 통지, 등록취소 통지 방법에 전자 문서를 추가(안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6)

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서식·절차 등 정비(안 제5조의6, 제36조의2, 별지서식)

- 1)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취소 절차·관리 근거 및 별지 서식 신설
- 2) 가맹본부가 가맹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서 자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및 자진 등록취소 신청인 확인을 위한 고유 식별정보 처리 근거 추가

마.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개편하며,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출할 때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의 범위에 폐업한 가맹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안 제5조의8, 제9조, 제16조의5)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6. 1. 28. ~ 3. 9.)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예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지”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로 한다.

6. 직영점을 운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5조의5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는 생략한다)

제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을 “사업자등록증명”로, “사업자등록증의”를 “사업자등록증명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을 “사업자등록증명”로, “사업자등록증의”를 “사업자등록증명의”로 한다.

제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6제1항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

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가맹본부가 법 제6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신청서에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 신청이 있으면 가맹정보시스템에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⑧ 가맹본부는 가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의8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제9조제4항 중 “이하 이”를 “단,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해 유지한 가맹점이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시점에 폐업 등으로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이 종료된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 중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를 “재무상태표·손익계

산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차대조표와”를 “재무상태표와”로, “대차대조표는”을 “재무상태표는”으로 한다.

제36조의2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6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1호나목 전단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영업표지”를 “영업표지, 본점 주소(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로, “소재지”를 “소재지(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만 기재)”로, “가맹사업 담당부서”를 “정보공개서 담당부서”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를 “가맹본부”로, “정보공개일”을 “작성기준일”로, “영업표지”를 “영업표지, 업종, 경영 기간,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정보공개서 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를 “가맹본부”로, “정보공개일”을 “작성기준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바. 정보공개서의 작성 기준일

별표 1 제2호마목 중 “그 밖의 영업표지”를 “가맹사업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정보공개 바로 전”을 “직전”으로 하며, 같은 목 1) 본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1) 단서 중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로 하며, 같은 목
3) 중 “종전 개인사업자의 1)의 정보(정보공개 바로 전)”을 “종전사업자
의 1)의 정보(직전)”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관련 임원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임원을 나누어”를 “관련 임원을”로, “정보공개일”을 “작성기준
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정보공개 바로 전”을 “직전”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이 정보공개일”을 “가맹본부가 작성기준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 중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
업연도 말 현재”를 “직전 3년간”으로 한다.

카.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가 가맹본부의 최대주주일
때 그 사모펀드의 일반 정보(펀드 명칭, 운용사, 보유지분율, 최대
주주 지분 취득일을 포함한다)

별표 1 제3호라목 중 “나누어 기재한다)”를 “매 분기별로 나누어 기재한
다)”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정보공개 바로 전”을 “직전”으로, “연도
별”을 “매 분기별”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
수관계인이”를 “가맹본부가”로,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을 “사업시작일과 직전 1년간 영업중”으로,
“직영점의 총 수”를 “직영점 총 수(매 분기별로 나누어 기재한다)”로 하
고, 같은 호 사목 중 “사업연도에 영업한”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바로 전”을 “직전”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를 “직전 분기 말 현재”로 하고, 같은 호 자목3) 중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를 “직전 분기 말 기준으로”로, “수)”를 “수”로 하며, 같은 호 차
목 중 “정보공개 바로 전”을 “직전”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차목 중 “광고 및 판촉 수단별”을 “광고, 일반판촉행사, 제
휴행사”로 하고, 같은 호 카목2)를 삭제하며, 같은 호에 과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정보
공개일”을 각각 “작성기준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가목1) 중 “기재한
다)”를 “기재한다) 및 현금·카드 등 결제 관련 정보”로 하고, 같은 목 4)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사유”를 “사유 및 현금·카드 등 결제 관
련 정보”로 하며, 같은 목 6) 중 “채용 및 교육”을 “채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POS)”를 “(POS), 필수품목 구입대금”으로, “기재한다)”
를 “기재한다) 및 현금·카드 등 결제 관련 정보”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가목 2) 중 “그”를 “그 상품 또는 용역 공급시 참여 형태,”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전단 및 2) 중 “바로 전”을 각각 “직전”으로 한다.

파. 장기 운영 가맹점 관련 정보

- 1) 가맹사업 영위기간
- 2) 직전 분기 말 기준 직전 3·5년간 폐점한 가맹점 총 수 및 직전
3·5년간 폐점한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대상이 되는
모든 폐점 가맹점의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폐점한 날까지
의 영업일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 3) 3·5·10년 이상 운영 가맹점 수·비율(직전 분기 말 영업 중
인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다)

4) 가맹점 1·3·5·10년 생존율(직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하. 해외 진출 현황(국가, 국가별 가맹점·직영점 수, 최초 진출연도, 진출지역을 포함한다)

별표 1 제6호라목2)를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7)을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5)를 삭제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2)를 삭제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8호라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 등”으로 한다.

6) 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위약금 현황(최근 3년간 매 분기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중도해지한 가맹점의 잔여 계약기간별 평균 위약금 부담액을 기재한다)

1) 광고와 판촉행사의 성격(상품광고인지 가맹점 모집광고인지, 멤버십 할인행사인지, 증정행사인지, 할인쿠폰 발행인지, 신용카드 할인인지, 통신사 할인인지, 배달앱 입점인지, 모바일상품권 발행인지 등)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 기준

3) 제휴 계약에 관한 세부 내역(통신사,신용카드, 배달앱, 모바일 상품권 등 제휴업체의 종류 및 명칭, 제휴계약의 세부 거래조건을 기재한다)

별표 1 제8호라목 중 “대한”을 “대한 정보,”로, “금액”을 “금액(가맹점 개설 단계와 가맹점 운영 단계를 모두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

호가목 중 “바로 전 사업연도”를 “직전 분기”로, “명칭 및 소재지”를 “명칭, 소재지 및 영업 개시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을 “직전 분기 말 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바로 전”을 “직전”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5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 기한
변경 등록 사항	별표 1 제1호: 전체 별표 1 제2호: 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대표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 한다) 및 자목 별표 1 제3호: 나목 별표 1 제4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별표 1 제2호: 차목 및 카목 별표 1 제3호: 자목1) 및 2) 별표 1 제5호: 가목, 나목1)·3) 및 다목 별표 1 제6호: 라목부터 바목4)까지, 사목부터 차목까지 별표 1 제8호: 전체 별표 1 제9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별표 1 제2호: 바목 및 아목 별표 1 제3호: 다목, 사목, 차목 및 파목4) 별표 1 제5호: 나목2)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 일.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 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별표 1 제6호: 가목 및 나목 별표 1 제10호: 다목 별표 1 제3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자목3), 과목1)·2)·3) 및 하목 별표 1 제6호: 바목6) 별표 1 제10호: 가목 및 나목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을 신청할 수 있다.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변경 신고 사항	별표 1 제2호: 나목 및 사목(대표자 이외의 임 원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별표 1 제3호: 가목, 카목 및 타목 별표 1 제7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00. 00.>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영업표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본점 주소(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위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만 적으며, 기재하지 않는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본점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대표 휴대전화	
	대표 전자우편	대표 팩스번호	
	개인(법인)	[] 법인사업자	
	사업자 여부	[]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정보공개서 담당자	성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무실 주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기관의 장 귀하 (공정거래위원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사/부산광역시 중 선택 기재)

첨부서류	1.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5.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직영점을 운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 생략) 7.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 있는 서류로서 처리기관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신청하는 때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의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할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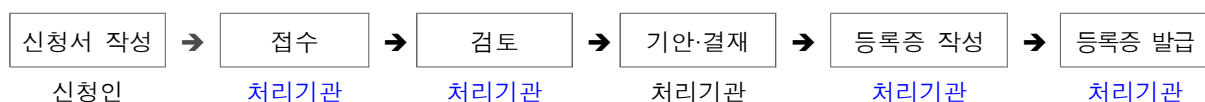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등록신청일부터 30일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기간은 2개월입니다.
2. 본점 주소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록기관에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법인명(상호):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상호를,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상 이름을 적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종류는 약칭으로 적습니다. [예: (주)조정원]
2. 영업표지: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국어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적은 후 괄호 안에 함께 적습니다. [예: 페어트레이드(Fair Trade)]
3. 본점 주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상 본점의 주소를 적습니다.
4.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만 적으며, 기재하지 않는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본점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5. 대표 휴대전화: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안내를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으로 받고 싶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6. 대표 전자우편: 개인 전자우편주소는 적지 않습니다.
7. 정보공개서 담당자: 회사 전화번호, 회사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별지 제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00. 00.>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franchise.ftc.go.kr\)](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변경등록 20일 변경신고 3일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영업표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본점 주소(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위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만 적으며, 기재하지 않는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본점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대표 휴대전화
	대표 전자우편	대표 팩스번호
	개인(법인) 사업자 여부	[] 법인사업자 []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정보공개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직위/직급 전자우편
신청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변경사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를 [] 변경등록 신청, []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기관의 장 귀하 (공정거래위원회/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부산광역시장 중 선택 기재)

첨부서류	1. 변경된 정보공개서(변경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정보공개서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할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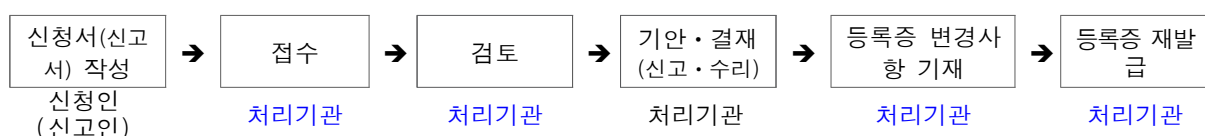
유의사항

1. 본점 주소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록기관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신청서나 변경신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사항과 변경신고사항을 함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서와 변경신고서의 해당 []에 모두 표시합니다.
2. 법인명(상호):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상호를,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상 이름을 적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종류는 약칭으로 적습니다. [예: (주)조정원]
3. 영업표지: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국어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적은 후 괄호 안에 함께 적습니다. [예: 페어트레이드(Fair Trade)]
4. 본점 주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상 본점의 주소를 적습니다.
5.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만 적으며, 기재하지 않는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본점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6. 대표 휴대전화: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안내를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으로 받고 싶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대표자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7. 대표 전자우편: 개인 전자우편주소는 적지 않습니다.
8. 정보공개서 담당자: 회사 전화번호, 회사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9. 신청사항: 변경 전·후의 내용을 정보공개서 관련 쪽수와 함께 적습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10. 변경사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처리절차



별지 제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25. 00. 00.>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영업표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본점 주소(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위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만 적으며, 기재하지 않는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본점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대표 휴대전화
	대표 전자우편		대표 팩스번호
	정보공개서 담당자	성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무실 주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4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의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기관의 장 귀하 (공정거래위원회/서울특별시청/인천광역시청/경기도지사/부산광역시청 중 선택 기재)

첨부서류	1.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	수수료
담당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의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확인에 동의할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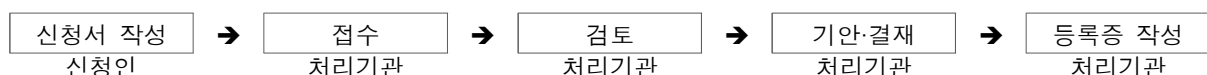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증 분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이후 위 영업표지로 새로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으며, 등록취소가 완료된 이후 그 영업표지의 가맹점을 새로이 모집(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을 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시 신규 가맹계약(가맹점운영권을 양수한 자와의 신규계약 포함)을 체결하려 할 경우, 그 이전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시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해야 합니다.
4. 본점 주소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록기관에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법인명(상호):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상호를,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이름을 적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종류는 약칭으로 적습니다. [예: (주)조정원]
2. 영업표지: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국어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적은 후 괄호 안에 함께 적습니다. [예: 패어트레이드(Fair Trade)]
3. 본점 주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상 본점의 주소를 적습니다.
4.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만 적으며, 기재하지 않는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본점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5. 대표 휴대전화: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안내를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으로 받고 싶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6. 대표 전자우편: 개인 전자우편주소는 적지 않습니다.
7. 정보공개서 담당자: 회사 전화번호, 회사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조의2에 따라 최초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u>6. 직영점을 운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5조의5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는 생략한다)</u>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③ ----- ----- ----- ----- -----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사
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사업자등록증(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확인
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⑥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정보공개서의 등록
을 거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⑦·⑧ (생략)

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등록사항이 변경된 경

-----.

-----.

1. 2. (현행과 같음)

3. 사업자등록증명-----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서면(전자문서를 포
함한다.)으로 통지-----.

1. 2. (현행과 같음)

⑦·⑧ (현행과 같음)

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변경신고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 ⑪ (생략)

제5조의4(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① 삭제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공개일 1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1. ~ 4. (생략)

③ (생략)

제5조의6(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 사업자등록증명을 -----

----- 사업자
등록증명의 -----

-----.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5조의4(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② -----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6(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① -----

사유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 ④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서
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가맹본부가 법 제6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신청서에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

<신 설>

제5조의8(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2. ~ 4. (생략)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신청이 있으면 가맹정보시스템에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⑧ 가맹본부는 가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의8(가맹금의 예치기관) --

-----.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 4. (현행과 같음)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6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

----- . 단,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해 유지한 가맹점이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시점에 폐업 등으로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이 종료된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① -----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② -----
----- 재무상태표와 -----

(지부가 있으면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고, <u>대차대조표는</u>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제3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생략) <u><신설></u> <u>1의2.</u> (생략) 2. ~ 5. (생략)	----- ----- <u>재무상태표는</u> ----- -----. 제3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법 제6조의4에 따른 정보 공개서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무</u> <u>1의3.</u>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992